

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병자년 새해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감리가 강화되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도심지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 수 있다. 5월부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노동, 주택, 교통, 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건축물 공사감리자에게 공사중지, 재시공 명령권 부여

■ 주택/건설부문

①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 공사감리자에게 공사중지, 재시공 명령권이 부여된다.

② 건설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해온 재건축 안전진단을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맡게 된다.

③ 건축물용도군이 32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단순화되면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④ 전용면적 1백35㎡ 이하인 완성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목돈을 빌려준 뒤 할부로 상환받는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시행된다.

⑤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주택착공보증제가 폐지되고 대신에 공사준공 때까지 시공보증을 해야 하는 주택분양보증제가 시행된다.

⑥ 건축신고대상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1백㎡ 이하까지로 신고대상이 확대되고 축사 뿐만 아니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⑦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⑧ 주상복합건물의 요건중 주거용 면적비율이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되고 총 주택의 세대수 제한도 폐지된다.

⑨ 녹지지역내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늘어나고 녹지지역내 자연취락 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도 3백50㎡에서 2백㎡로 줄어든다.

⑩ 주암댐 광역상수도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주암댐으로부터 하루 12만t의 물이 목포지역에 공급되며, 6월부터 안성천 유역

에도 5대 강처럼 홍수에경보시설이 가동된다.

■ 교통부문

① 도로법의 개정으로 건설, 유지,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제도가 시행된다.

②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등 다량의 교통유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확대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 혼잡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이곳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들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④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1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생략된다.

⑤ 7월부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별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⑥ 서해안 고속도로 중 안산-안중(43.7km),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김포-일산(3.5Km),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중 진주-서진주(7.8km)가 각각 개통되고 호남고속도로 중 고서-순천간(71.

4km)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다.

⑦ 항만시설을 민자로 유치해 건설할 경우 발생하는 항만배후부지를 민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제도가 개선된다.

⑧ 토큰 및 현금제로만 되어 있는 시내버스요금체계에 요금카드제가 추가되고 화장실 및 세면대가 부착된 고급형 우등버스가 도입된다.

⑨ 1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의 차종기호가 1자리수에서 2자리수로 늘어나고 일련번호를 한글로 음각해 추가표시하는 등 자동차번호판이 바뀐다. 아무 때나 원하는 시기에 바꿀 수 있지만 차를 바꾸거나 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반드시 새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⑩ 10월부터 자동차 정기점검에서 노후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 수검의 무가 폐지된다.

⑪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시행해온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정자동차정비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⑫ 800cc 이하 경자동차의 등록세율이 5%에서 2%로 낮아지고 면허세도 절반정도로 줄어든다. 1가구 2차량이 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만 내고, 8월부터는

책임보험료도 30% 할인받는다. 3,000cc 이상 비영업용 지프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이 cc당 200원에서 230원으로 오르는 등 9~21%까지 차등 인상된다. 그리고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자동차 세율이 인하된다. 영업용 3000cc 이상은 cc당 410원에서 310원으로, 비영업용은 630원에서 370원으로 인하된다. ⑬ 7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던 운전면허시험을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일반 운전학원에서도 볼 수 있다. ⑭ 8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의해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지금은 1,500만원이던 것이 3,000만원, 600만원이던 부상은 1,000만원까지 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다.

■ 금융/증권/보험

① 지금까지는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75%를 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접대비가 상향 조정된다.

② 10대 계열 기업군의 부동산 취득이 완화된다. 10대 그룹은 폐기물처리 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구의무가 면제되고 해외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③ 7월 1일부터 서울의 8개사 등 전국 15개 투자금융사들이 종합금융업무를 하도록 투자금융사의 종합금융업이 허용된다.

④ 1월부터 5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정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더라도 연체대금을 갚는 즉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되어 향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값비싼 내구재와 주택, 기계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필요자금을 대어해 주고 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할부금융사가 문을 연다.

⑥ 투신과 증권간의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투신사는 투신운용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신탁회사와 운용업무만을 맡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문을 연다.

⑨ 2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 즉시 결제계좌에서 사용자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가 선을 보인다. 사용한도는 1회 10만원, 1일 50만원, 31개 은행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⑩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던 근로자정기저축 등 7개 저축에 10%의 세금이 붙는다. 또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5개 저축은 이자소득세율이 5%에서 10%로

높아진다.

⑪ 시행시기는 미정이지만, 해외로 나갈 때 1만달러(약 780만원)까지 갖고 나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3백만원이 한도이다.

⑫ 시행시기는 미정이지만, 해외 이주비 한도가 세대주는 현행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세대원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확대된다. 4인 가족의 이주 정착비가 현재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되는 셈이다.

■ 세금

① 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낮아지고 세율구조도 5~45%의 6단계에서 10~40%의 4단계로 조정된다. 근로소득공제는 4백만원으로, 공제한도는 6백9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현재 72만원)와 배우자공제(현재 54만원), 부양가족공제(현재 1인당 48만원) 등이 각각 1백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녀의 경우 2인 이내의 제한이 폐지되고 4인 가족의 경우 인적공제액이 2백22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비공제도 초·중·고교생 자녀에서 유치원생(1인당 70만원) 및 대학생(1인당 2백30만원)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나 혼자 사는 남성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만6세 이하 자녀 1인당 50만원씩 공제받는다.

②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10~40% 세율의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4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5%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단 주식의 양도차익과 채권의 매매차익, 5년만기 이상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가 되며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 5년 이상의 정기예·적·부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30%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③ 법인세율이 2% 포인트인 하되고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이 1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에서 15%로 늘고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오는 98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④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연매출액 1천2백만원 미만에서 2천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기준금액은 연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⑤ 양도소득세율이 40~60%의 5단계에서 30~50%의 3단계로 인하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로 완화된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상

환이자의 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 및 증여세율의 경우 상속세는 최고 50%, 증여세는 최고 55%에서 각각 최고 40%로 낮아지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는 다소 인상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했던 취득세 신고를 6개월 안에 하면 된다.

⑥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주택저축, 주택청약저축, 장학적금, 근로자증권저축 등 7개 저축상품의 경우 95년 불입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되었으나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 소액가계저축과 노후생활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저축 등 5개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금년부터는 10%로 늘어난다.

■ 환경

①소비자에게 저소음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소음을 발생하는 굴착기, 발전기, 향타기 등 8종의 기계 등에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②폐기물관련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를 조사한다.

③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 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시설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절차를 완화한다.

④현행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폐기물 분류체계를 변경해 발생원인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한다.

⑤TV, 냉장고, 세탁기 등 6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된 완충재를 회수 및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감량해야 한다.

⑥3월부터 페스티로폴을 기존 금속캔, 유리병 등과 같이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하여 종량제 봉투 속에 넣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 노동부

①상용근로자의 70% 이상(최소 10인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중 중증장애인이 3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소요비용의 3분의 2(최고 2억원)까지 무상지원하며 소요비용의 50%(최고 50억원)를 5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②7월부터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시 실직전 임금의 50%를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일 내지 1백20일간 지급한다.

③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

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5인 이상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④기능대학의 다기능 기술자 과정 졸업자에 대해 전문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⑤기능계 기술자격중 심유기계 기능장 등 24개가 신설되고 32개 유사종목이 14개로 통폐합되며 수요가 낮은 기어절삭 기능사2급 등 18개 종목은 폐지된다. 또 기능사2급 취득후 기능장 취득을 위한 소요경력기간이 14년에서 9년으로 단축된다.

■ 교육부

①3월부터 1941년부터 사용해온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뀐다.

②3월부터 학부모가 조기취학을 희망하고, 가고자 하는 국민학교가 수용능력이 있을 경우 만5세 어린이도 입학할 수 있다.

③시행시기는 미정이지만 초·중·고교에 종합생활기록부가 도입된다. 교과목 총점·석차에 의한 내신이 사라지고 대신 교과목 성취수준과 특별활동사항 등을 기록하는 종합생활기록부가 도입되어 진학자료로 활용된다.

[교과활동]

고교·대학입시 전형자료로 쓰일 교과성적 산출의 가장 큰 변화는 총점·석차가 사라지는 대신 과목별 계열석차가 백분율로 표기돼 학생의 과목별 강약점을 한눈에 알게 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문장으로 쓰여진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국어과목이라면 「시적감각이 뛰어나 쓰기에 소질이 있으며 교내 독후감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으로 기재된다. 또 상대평가가 「수·우·미·양·가」식 절대평가로 바뀌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급우와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단 쉬운 문제위주의 출제를 막기 위해 문제 난이도에 따른 평균점과 비례해 「수~가」성취도 기준점수대가 조정되도록 하는 성취도 평정환산 기준 등이 교육부에 의해 제시됐다. 시험은 주관식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문항수를 늘리며 문항당 배점을 다양화하도록 했으며 당겨진 입시일정에 따라 기준일을 12월 1일로 했다. 또 수업에만 열심히 참가하면 최소한 「미」 이상이 보장되는 실기평가 최소점수제가

클럽활동은 물론 학급·학교·단체활동이 담당교사에 의해 누가기록된뒤 학년말에 담임에게 넘겨져 특별활동 사항으로 기재된다. 봉사활동도 일시·장소·활동내용·시간수가 적혀진 누가기록을 작성한뒤 이를 근거로 학년말에 같은 종류의 활동 내용별로 활동시간·횟수가 각각 합산 기재된다. 이때 교사의 자의적 평가와 기록은 금지된다. 행동발달 사항은 부정적 내용이 많은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부분에는 긍정적 내용을 쓰고 뒷부분에 고쳐야 할 행동내용을 포함하는 문장으로 기재하며 관련 수상실적을 쓸 수 있다.

④ 형제·자매의 결혼 등 경조사 활동은 결석일수에서 제외하며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도 결석·결과·지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교운영위를 통해 원하는 사람을 학교장으로 모셔올 수 있다. 현재 교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으로 공석이 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중이다.

⑦ 대학 및 사범대학의 총·학장이 계열별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2, 3학년에 한해 전과를 허용하게 된다. 편입학도 입학정원에서 현재 재학생을 뺀 인원만큼 허용된다.

⑧ 한달에 1만7,000원 지급되던 교직수당이 1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⑨ 초·중·고교의 각급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은 국교에서 1회, 중학교와 고교를 합쳐 1회 등 총 2회까지 월반하거나 조기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⑩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안에 신설되는 장기 전문교육과정으로 공대 산업디자인학과 출신 대학생과 기업체 실무디자인을 대상으로 연간 60명을 선발, 주 40시간씩 총 2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⑪ 영재교육센터가 상반기중 교육개발원 안에 설립되며 영재들의 창의력 촉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학습자료의 개발 등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

①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7만8천원에서 10만1천으로, 시설보호자는 7만2천원에서 9만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사망	부모의 및 부모의 직계존속	5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3
탈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처음 도입되어 열심히 하고도 선천적 능력이 모자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폐해나 주관적 평가로 우려되는 치맛바람을 사전에 차단했다.

[특별활동]

⑤ 11월부터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와 중학교 경우 학생들에게 학군내에서 희망하는 고교를 복수 지원하도록한뒤 무작위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한다.

⑥ 시행시기는 미정이지만 학

2천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인문계고교생 자녀에게 지급하던 학비를 중학생과 실업계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한다. 생업자금융자한도액도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상가구도 6천가구에서 7천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②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연중 실시하며 버스승차권 대신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동사무소가 지정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면 매달 돈을 자동으로 이체받아 쓸 수 있다.

③ 2백10일로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이 연중 실시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④ 슬광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가 제한을 받게 되고, 연면적 3,000평방m 이상의 공공건물에는 흡연·금연 구역 구분지정이 의무화된다.

⑤ 의료보험가입자의 연간 보험적용기간이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연장되고 컴퓨터단층촬영(CT)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 내무부

① 본인 또는 세대원, 직계 존비속, 가족 등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대상을 빗쟁이나 소송 당사자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팩스로 할 수 있다.

② 토지등급가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했던 것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③ 취득세, 등록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 : 개인간 거래시 신고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한다.

④ 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액(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⑤ 3월부터 서울시내의 은행·우체국에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금융전산망을 통해 해당기관에 통보되어 서류를 집에서 직접 우송받을 수 있다. 대상서류는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19종이다.

⑥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국내 토지를 팔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 산업부

① 중소기업공장용 토지임대 지원을 위한 입지지원사업 시행 : 토지임대사업자에게 부지구

입비의 50%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② 대구와 경기에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며 부산과 대구, 광주 등에 산학공동연구센터가 시범 설치된다.

③ 수입부과금제 도입 : 액화천연가스(LNG)에 처음으로 도입되며, 수입 LNG에 배럴당 1달러 70센트의 부과금을 물린다.

■ 농림 수산부

① 10ha로 제한되었던 농지소유상한이 대폭 완화돼 농업진흥지역 안은 소유상한선이 폐지되며 농업진흥지역 밖은 현행대로 3ha의 상한선을 유지하되 시장·군수의 허가가 있으면 5ha까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농지의 위탁경영범위도 확대되어 주요 농작업의 3분의1 이상 또는 연중 30일 이상만 영농에 종사하면 나머지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율경쟁을 억제하고 인삼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온 홍삼전매제가 폐지되어 홍삼의 제조 및 판매가 완전 자율화된다. 지금까지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던 인삼업부기관장기관이 농림수산부로 바뀐다.

③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무와 배추, 양배추, 대파, 마늘, 양파 등 6개 품목을 쓰레기유발 부담금 징수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장개설자가 여건을 감안해 부

과대상품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전예고 및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 정보/통신부문

①(주)데이콤이 최고 9%까지싼 요금의 시외전화 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시외전화 사업은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복수 경쟁체제를 맞게 된다. 데이콤의 시외전화를 이용하려면 지역번호 앞에 사업자식별번호인 082번을 누르면 된다.

②6월중 정부의 통신사업 경쟁력강화 정책에 따라 국제전화 1개, PCS(개인휴대통신) 전국사업자 3개, 무선데이터 전국사업자 3개 등 7개 분야에 걸쳐 30여개의 신규통신사업자가 선정된다.

③2월부터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65만원씩 내던 설비비가 폐지되는 대신 가입보증금 20만원이 신설된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설비비는 2, 3월에 반환되는데 적어도 45만원을 환불받게 된다. 4월부터 신세기통신이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별번호는 017이다. 또 한국이동통신이 기존 아날로그 이동전화 이용자들에게 음질이 좋은 디지털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7월부터 KBS가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시험 위성방송을 실시하는데 이어 하반기에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를 허가한다.

8월에는 FM방송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FM방송국도 허가된다.

⑤6월부터 장애자 및 저소득층은 가까운 병원·구청에서 초고속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원격치매진료·원격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법무부문

①입국신고서와 출국신고서가 내·외국인 구분없이 1개 서식으로 통일되고 신고서 표기문자도 한글외에 외국어는 임의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②서명만으로 어음·수표의 발행과 배서가 가능, 도장 소지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 국방부문

①쌀은 전량 일반미로 하고 부식도 중·석식은 1식4찬으로 한다. 사병 제공 칫솔을 1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전투화도 방수처리된 부드러운 가죽으로 개선한다.

②기본 연금을 매달 35만5천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호수당을 매달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조정한다.

③4월부터 고엽제 후유 증환자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한편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 및 학자금도 지원한다.

④영주 귀국하는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 대해 정착 지원금 3천만원을 지급

한다.

⑤병역의무자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징병검사를 교통이 불편할 경우 인접 지방병무청에서 받도록 허용한다.

■ 여성관련부문

①5.7급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구분없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만큼 합격자를 결정하되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에 이르지 못할 경우 5급은 합격선보다 3점 이내, 7급은 5점 이내로 낮은 「예비군」 가운데서 목표비율을 채울 때까지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게 된다.

②그동안 3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 등의 경우 여성 입학률이 극히 낮았으나 우수한 여성 인력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각 교육기관마다 최저 10% 이상 의무적으로 여성입학을 허용하게 한다.

■ 서울시

①남산 1, 3호터널을 도심방면으로 진입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수시간 및 통행료 등 세부내용은 상반기중 결정된다.

②11월부터 교통방송국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모든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③7월부터 가정이나 직장에

서 택시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를 찾아 전화로 모범택시를 부르는 것이 가능해진다.

④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인에게 5천원 짜리 공중전화카드가 지급된다.

⑤ 3월부터 가정용과 영업용 상수도 요금에 평균 19.8%씩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평균 17.7%씩 오르며 2월부터는 희망하는 시민들은 은행계좌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다.

⑥ 건물 신축후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던 상수도공채가 없어진다.

⑦ 4월부터 잠실·동대문·목동운동장·뚝섬체육공원 등에서 주차료를 징수한다.

■ 기타

①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재직중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망명요청을 한 경우 등은 연금지급 등 각종 예우가 중단된다.

② 민간분야에서 박사학위나 변호사 등 자격증을 얻은 후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사람이나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에 근무한 전문가를 공무원에 채용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경력에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자나 변호사가 5급에 임용될 때는

80%, 6급에는 1백% 민간경력이 반영된다.

③ 연금비용부담률이 종전 5.5%에서 6.5%로 높아지는 대신 연금지급에서 부담해오던 퇴직수당부담금중 기금부담금과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이 정부재정부담으로 넘어간다. 또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제도가 도입되어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55세에서 59세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0세 미달연수 1년당 퇴직연금의 5%씩을 뺀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사법시험최종합격자가 종전 3백명 수준에서 5백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⑤ 불법계량기 유통 및 부정계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계량모니터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⑥ 상반기내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견인업, 먹는 샘물 등이 소비자피해보상대상 업종으로 추가되고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수리 및 환불 등 보상기준이 보완된다.

⑦ 자동차세 납세필증명서 제작·교부와 부착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이들 제도가 폐지된다. 지난 94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⑧ 개인간 중고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산 사람이 법정기간 안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판 사람이 피해를 볼 경우 판 사람이 단독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⑨ 7월부터 특허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늘어난다. 현재의 1년6개월후 공개에서 출원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바뀐다.

■ 방송/언론

① 95년 방송을 개시한 CATV의 지역방송국이 현행 54개에서 추가로 허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CATV 시청권에서 벗어나 있던 시·군지역은 물론 평촌, 일산 등 신도시 주민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②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언론중재위에 결정권을 부여, 언론사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신청인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중재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